

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 관리·운영
민간위탁 동의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 관리·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4. . .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 관리·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4. 12. 31.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
- 나.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사무명칭 : 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 관리·운영

나. 추진근거

- (1) 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29조(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)
- (2) 「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5조(운영)
- (3)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(의회 동의)

다. 위탁사무

- (1) 근로자문화센터(부속시설물·장비 포함) 운영 및 시설물 유지·관리
- (2) 근로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·문화시설 운영
- (3) 근로자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등의 업무 지원
- (4)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라. 시설개요

- (1) 소 재 지 : 구미시 해마루공원로 24
- (2) 규 모 : 부지 15,503㎡/건축연면적 5,975㎡ (지하2, 지상3)
- (3) 지원시설 : 수영장, 헬스장, 공연장, 작은 도서관 등 문화체육 여가시설

층 별	연 면 적	주 요 시 설	비고
계	5,975.3㎡		
지하2층	307.79㎡	수처리실 및 공조실	
지하1층	2,556.37㎡	수영장, 헬스장, 에어로빅장, 탈의실, 샤워실, 기계실	
지상1층	1,392.6㎡	근로자건강센터, 사무실, 커뮤니티공간, 야외공연장, 문서고, 방송실 등	
지상2층	804.83㎡	도서실, 컴퓨터실, 전시홀, 어학실	
지상3층	913.71㎡	시청각실, 취미교육실, 방송실	

마. 위탁기간 : 2025. 1. 1. ~ 2029. 12. 31.(5년)

* 최초위탁 : 2011. 8. 30. ~ 2014. 12. 31.(3년 4개월)

1차재계약 : 2015. 1. 1. ~ 2019. 12. 31.(5년)

2차재계약 : 2020. 1. 1. ~ 2024. 12. 31.(5년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성과평가 및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재계약

사. 위탁조건 : 위·수탁 협약 체결에 의함

아. 수탁단체 : 한국노총경북구미지역지부

자. 소요예산 : 2,577,000천원 ※ 2025년 추계액 기준

차. 적정성검토결과 : 적정 ※ 2024년 제3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

카. 그 밖에 심의가 필요한 사항 : 해당없음

타. 성과평가결과

- 일 시 : '24. 9. 26.(목) 14:00
- 평가자 : 노동권익팀장 외 1명
- 평가내용 : 사업계획의 적적성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,
사업목표 달성수준 등
- 평가방법 : 운영 점검 및 성과평가 기준표에 의함

부문	공통분야(60점)			개별분야(40점)			
	사업계획	예산관리	성과관리	사업추진	사업홍보	전문성	만족도
배점(100)	20	20	20	10	10	10	10
평점(87)	16	17	18	9	9	10	8

파.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결과 : 70점이상으로 적격 판정

- 일 시 : '24. 9. 27.(금) 14:00
- 장 소 : 별관1, 노동조합 회의실
- 참석자 : 심의위원 7명
- 심의대상 : 한국노총경북구미지부 (의장 전상구)
- 심의내용 : 심의 배점표에 따른 재계약 수탁기관 적격 여부 심의

위원 심사 대상	A	B	C	D	E	F	G	합계	평균 점수 (최고·저 점수 제외)	비고
	한국노총경북지역 구미지부	93	86	92	83	89	91	92	626	

3. 부서 의견

- 근로자 복지증진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의 운영으로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한 근로자 친화적 서비스 제공에 기여
- 수요를 반영한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으로 민간이 보유한 특화 노하우를 폭넓게 활용하여 근로자문화센터 운영의 효율성 제고
- 한국노총경북지역구미지부는 현재 13년째 구미시근로자문화센터를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, 이러한 운영 인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재계약 시 근로자문화센터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 촉진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

4. 참고사항

- 위치도 및 조감도
- 관계법령
- 비용추계서

위치도 및 조감도

□ 위치도



□ 전경



관계법령

□ 「근로복지기본법」

제29조(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8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□ 「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

제5조(운영) ① 센터 및 회관의 운영은 구미시(이하 “시” 라 한다)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

다만, 시장이 전문적 관리와 근로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「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의 규정에 따라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법인·단체 또는 개인(이하 “수탁관리자”라 한다)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센터 및 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,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.

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

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관리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수 없다.

④ 센터 및 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 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센터 및 회관의 재산과 시설(이하 “재산”이라 한다)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.

□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5조(의회 동의)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1.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정한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
2. 수탁기간 1년 미만의 일회성 사무 또는 연간 위탁금액 1억원 이하의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
3. 청소,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 및 재계약의 경우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구미시 근로자문화센터 관리·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

- 구미시근로자문화센터 민간위탁시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·운영비·사업비 등 재정소요가 예상됨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2025년도 지급 기준에 준하여 산정함
-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분		연도					합계
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
세출	소계(b)	2,577,000	2,577,000	2,577,000	2,577,000	2,577,000	12,885,000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 : 천원)

구분		연도					합계
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
	국비	-	-	-	-	-	-
	도비	-	-	-	-	-	-
	시비	2,577,000	2,577,000	2,577,000	2,577,000	2,577,000	12,885,000
	민간	-	-	-	-	-	-
	기타	-	-	-	-	-	-
	합계	2,577,000	2,577,000	2,577,000	2,577,000	2,577,000	12,885,000

5. 부대의견 : 본 추계결과는 운영비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재정소요액이 변경될 수 있음.

6. 작성자 : 노동복지과 노동권익팀 조수빈(☎480-6213)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(단위: 천원)

기간	항목	예산액	산출기초	
합계		12,885,000		
2025	소계	2,577,000		
	인건비	1,699,834	• 일반직/생활체육직/실버직/파견직 인건비	51,510천원*33명
	운영비	872,166	• 수도광열비	345,316,000원
			• 통신비, 공공요금 및 제세	57,277,000원
			• 토너, 사무용품 구입 등	35,638,000원
			• 피복비, 도서인쇄비 및 지급임차료 등	20,156,000원
			• 수영장 조명시설 유지보수 등 수선유지비	67,184,000원
		• 보험료, 지급수수료, 보상비 등	346,595,000원	
사업비	5,000	• 운영 예비비	5,000,000원	
2026	소계	2,577,000		
	인건비	1,699,834	• 일반직/생활체육직/실버직/파견직 인건비	51,510천원*33명
	운영비	872,166	• 수도광열비	345,316,000원
			• 통신비, 공공요금 및 제세	57,277,000원
			• 토너, 사무용품 구입 등	35,638,000원
			• 피복비, 도서인쇄비 및 지급임차료 등	20,156,000원
			• 수영장 조명시설 유지보수 등 수선유지비	67,184,000원
		• 보험료, 지급수수료, 보상비 등	346,595,000원	
사업비	5,000	• 운영 예비비	5,000,000원	
2027	소계	2,577,000		
	인건비	1,699,834	• 일반직/생활체육직/실버직/파견직 인건비	51,510천원*33명
	운영비	872,166	• 수도광열비	345,316,000원
			• 통신비, 공공요금 및 제세	57,277,000원
			• 토너, 사무용품 구입 등	35,638,000원
			• 피복비, 도서인쇄비 및 지급임차료 등	20,156,000원
			• 수영장 조명시설 유지보수 등 수선유지비	67,184,000원
		• 보험료, 지급수수료, 보상비 등	346,595,000원	
사업비	5,000	• 운영 예비비	5,000,000원	
2028	소계	2,577,000		
	인건비	1,699,834	• 일반직/생활체육직/실버직/파견직 인건비	51,510천원*33명
	운영비	872,166	• 수도광열비	345,316,000원
			• 통신비, 공공요금 및 제세	57,277,000원
			• 토너, 사무용품 구입 등	35,638,000원
			• 피복비, 도서인쇄비 및 지급임차료 등	20,156,000원
			• 수영장 조명시설 유지보수 등 수선유지비	67,184,000원
		• 보험료, 지급수수료, 보상비 등	346,595,000원	
사업비	5,000	• 운영 예비비	5,000,000원	
2029	소계	2,577,000		
	인건비	1,699,834	• 일반직/생활체육직/실버직/파견직 인건비	51,510천원*33명
	운영비	872,166	• 수도광열비	345,316,000원
			• 통신비, 공공요금 및 제세	57,277,000원
			• 토너, 사무용품 구입 등	35,638,000원
			• 피복비, 도서인쇄비 및 지급임차료 등	20,156,000원
			• 수영장 조명시설 유지보수 등 수선유지비	67,184,000원
		• 보험료, 지급수수료, 보상비 등	346,595,000원	
사업비	5,000	• 운영 예비비	5,000,000원	

소 관 부 서		노동복지과
입 안 자	과 장	유 태 란
	팀 장	최 선 자
	담 당 자	조 수 빈 (480-6213)